-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○ 사과,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주로 발생하며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지 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땅한 치료제 없어 매몰,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식물방역법」 제2조
 - -「식물방역법」 시행규칙 제4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- 0기 타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4. 1. 4. ~ 2024. 1. 11.)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【붙임 2】

라. 성별영향평가: 【붙임 3】

- 개선사항 없음(2023. 12. 12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·보급,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른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·매몰한 과수농가의 영농활동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금지병해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과수화상병의 경우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, 감염 의심 과수는 매몰하고 확진 시에는 과원 전체를 매몰 하도록 되어 있어 폐원으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상당한 손실을 초래함.
- 따라서 금지병해충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많은 노력과 대체작물 식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조례제정 안으로
-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함.